

충주음악창작소 공연장 정기대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충주음악창작소의 효율적인 정기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충주음악창작소 (이하 “창작소”라 한다)의 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운영규정 및 세부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안내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기 대관 절차) ① 정기대관절차는 아래에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대관예약

정기대관 : 상반기(전년도 12월), 하반기(당해 5월)

수시대관 : 정기대관 승인통보 완료후 정기대관 확정 날짜를 제외한 잔여날짜 중 사용일 3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접수방식 : 정기대관(메일접수), 수시대관(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2. 대관심의

충주중원문화재단 자체 심의 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사

공공성, 문예진흥성, 작품성, 제출서류의 완성도, 기타 결격사유의 해당여부 등을 반영하여 심사

※ 같은 날짜에 2개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중복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필요서류를 완벽하게 접수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선정

3. 대관승인

사용고지서 메일발송

4. 대관허가

기본사용료 납부 시 홈페이지에서 대관 허가 통보

5. 무대 스텝회의

충주음악창작소 : 043)842-5909

6. 공연진행

공연 진행 및 공연장 주변 정리

제4조(정기대관 신청서류) ① 정기대관 접수시, 신청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야한다. (E-mail. tlsdbfk950@cjcf.or.kr)

1. 대관시설 사용허가신청서
2. 공연, 행사 세부계획서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은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사본

※ 정기 및 수시대관 선정 후 부속시설 사용추가, 변경, 취소신청시 유선문의후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제5조(대관일수 제한) ① 공연장 정기대관 대관날짜는 개인 또는 한 단체당 상·하반기 각 3일로 제한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① 창작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며, 적발되는 즉시 철수해야 한다.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치적, 종교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모임, 토론회, 결의대회 또는 유사모임
3. 상업적 목적 달성 및 친목 도모 목적의 설명회, 교육 및 유사 행사
4. 창작소가 소유한 각종 악기, 장비 등에 대한 활용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정상적인 대관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5. 대관 사용권을 타 단체(인)에게 양도할 경우
6. 대관신청서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정기대관 신청자는 사용고지서 메일발송 안내를 받은 2주 이내 기본사용료 납부가 완료 되어야 대관허가가 가능하다.

※ 납기일 미준수시 대관취소

1. 대관료 납부

신청서 사용승인 심사 승인처리 건에 한하여 시설사용료 부과하며, 납부 확인 후 시설이용가능 함.

허가된 시간, 설비를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공연 전 선납한다.

2. 사용료의 반환

정기대관시,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액반환
-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개월 전 취소 시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전 1개월 이내, 7일 이전 취소 시에는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 4) 그 외 운영규정에 따름 - 충주음악창작소 운영규정 11조(사용료의 반환)
 -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 사용자가 사용일 전 7일내에 취소요구 시. 50%를 뺀 후 잔액을 반환.
- 5)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 불가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